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0,778,241	12,323,347
일반회계	374,841,219	11,245,237
특별회계	35,937,022	1,078,111
공기업특별회계	20,601,717	618,05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914,205	417,4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87,512	200,625
기타특별회계	15,335,305	460,059
주택사업특별회계	209,680	6,29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68,570	11,0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35,500	49,065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790,829	23,72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78,434	17,3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12,145	15,364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661,000	139,83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22,700	72,6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48,000	70,4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00,252	36,008
기반시설특별회계	608,195	18,246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82,82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